의 안 1755 번 호

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0.(목)

2. 제안이유

가. [유통산업발전법] 개정으로 상점가 정의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
-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 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
- 다. 농어민지역매장 운영자 지역제한 규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'상점가' 정의 조항 개정(안 제2조제4호)
- 나. '골목형상점가' 지정 관련
 - '골목형상점가'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제4호의2호)
 - '골목형상점가' 지정 조항 신설(안 제40조)
 - '골목형상점가' 지정 신청 조항 신설(안 제41조)
 - '골목형상점가'지정 취소 조항 신설(안 제42조)
- 다. 농어민지역매장 운영자 지역제한 개정으로 규제 완화
- 라.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, 잘못된 문장 성분과 불필요한 표현을 정리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
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제5조
- 다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의2
- 라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, 조례의 반영은
- O 음식점 등이 상당수 밀집한 골목상권 구역도 홍보마케팅 지원, 주차장 건립,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유통산업발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"상점가" 란 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・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.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

제5조(상점가의 범위) 법 제2조제7호에서 "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 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.

- 1.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
- 2.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·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 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(이하 이 조에서 "특성업종 도소매점포"라 한다)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·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지구
 - 가.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 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
 - 나.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
 - 다.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상점가" 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 2의2. "골목형상점가" 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